



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 재개

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(시험·검사기관 인정)와 「공인기관인정제도 운영요령」 제29조 (인정취소 등)의 규정에 의거 인정정지하였던 국제공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인정재개를 공고합니다.

2012년 2월 10일

한 국 인 정 기 구 장

기 관 명 : ㈜아이에스티

대 표 자 : 김 병 식

법 인 등 록 번 호 : 131111-0042124

사업자등록번호 : 129-81-29947

법 인 주 소 :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00-19

사 업 장 소 재 지 :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00-19

유효 기 간 : 2010년 03월 24일 ~ 2014년 03월 23일

인 정 재 개 분 야 : 03.전기시험 03011.전자기적합성

부칙 :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 끝.